

2021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감사기간: 2021. 10. 12. ~ 11. 18.]

2021. 12. 23.



학 교 법 인 **조선대학교**

목 차

■ 2021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1
------------------------------------	---

■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

1. 조선대학교	3
2. 조선대학교병원	10
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14
4. 호남권역재활병원	15
5. 조선이공대학교	17
6. 조선간호대학교	21
7.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2

2021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 사 회 귀 중

2021년 12월 23일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와 우리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및 설치학교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재산상황, 회계에 대한 감사와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에 대한 인수·인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시한 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1. 제 법령, 정관, 규정의 준수 여부
2. 법인 및 각 설치학교의 규정 정비 여부
3. 제 규정의 법령, 정관 및 타 규정과의 부합 여부
4. 편성된 예산의 실행가능성,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5. 적절한 자산관리와 그 유지 여부
6. 법인과 설치학교간의 유기적 협조 여부
7. 법인 및 설치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8. 각 기관장의 업무장악 및 효율적인 통제 여부
9.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유지 여부
10.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11.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결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13. 각급 기관장 및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에 인계·인수 적정성 여부
14. 기타 법인과 각 설치 학교 및 기관의 발전계획 검토 등

각급 기관의 회계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이나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각급기관은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 외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업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채인 (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박태성 (인)

2021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수·인계감사 결과보고서

(2021. 12. 23.)

기관명: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 채 인 (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박 태 상 (인)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1	교비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기타이월은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자금(불용액, 예산절감, 사업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2	미래사회융합대학의 2020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중간평가보고서) 작성 경위 확인 조선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조(교원의 구분)에 의하면 강의전담교원은 기초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강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이며, 교육중심교원은 국책사업 관련 학부(과) 및 일반 학부(과)에서 교양이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학부 교수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3	실험실습비 집행 관리 부적정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구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에서는 2016학년	○ - 전 학과장 교수

연번	지 적 사 항	구분																																																
	실험 소모품으로 TLC plate(glass) 총 10개를 발주하고 납품받았지만, 2021년 11월 현재 상이한 TLC plate(aluminum) 9개가 남아 있습니다.	○																																																
	<table><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table><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실험·실습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실습소모품을 변경한 담당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4	재정개선 추진 과제 미이행 및 발전기금 모집 부족 조선대학교는 2021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편성과정 중에 재정TF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입 측면의 11개 과제 중 5개 과제와 지출 측면의 41개 과제 중 11개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제7차 이사회(2021.7.1.) 및 2021년 제8차 이사회(2021.8.26.)에서 보고한 조선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 재정개선 추진과제 실행계획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석·박사논문지도비	○
5	성적산출자료 관리 방안 개선 드	○

연번	지 적 사 항	구분
	험관리 경우 ‘시험에 관한 기록물로 최소 4년(재학기간) 이상 보존할 필 이에 단과대학의 시험지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기록물 보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성적산출자료에 대한 기록물 보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6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등 관련 제도의 추가 정비 필요 교육부의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 사항(대학 학사제도과-14415(2018.12.7.)에 따라 「학사 규정」 제30조의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를 2020년 1월 8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규정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7	창업휴학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교육부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대학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업휴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고 창업휴학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닌 경우 세부적인 허용기준을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1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허용하며,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창업현장을 점검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 등 정비를 권고합니다.											
